

대학헌장

제1장 총칙

제1조(교육이념) 예원예술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학술연구, 덕성함양, 도의실천, 사회봉사”를 건학이념으로 “창조적 예술인, 실용적 전문인, 봉사적 교육인”이라는 대학이념에 부합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인류 보편의 가치를 추구하는 교육을 통하여, 사회에 봉사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함을 교육이념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적 및 교육목표) ① 본교 교육이념에 근거한 전인교육을 바탕으로 학문과 교육의 실용화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공헌하는 창의적 실용인재를 양성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전향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기초역량 강화교육을 통하여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을 지닌 창조적 예술인을 양성한다.
2. 다양한 실천지향적 교육을 통하여 유연한 사고와 창의적 전문성을 갖춘 실용적 전문인을 양성한다.
3.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올바른 가치관과 리더십을 구현하는 봉사적 교육인재를 양성한다.

제2장 교육과정

제3조(교육의 기본방향) ① 교육 비전과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특성화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요자 중심 교육
2. 지식의 전달 및 기능위주의 교육보다는 인성과 창의력을 통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배양하는 교육
3. 협동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

② 교육과정의 특성화는 공동체적 인성을 함양하는 교육, 현장 중심의 실용 교육을 지향한다.

③ 학생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양교육과정 프로그램과 전공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4조(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① 학교는 건학이념과 교육목표의 실현, 학문적 수월성 추구, 사회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며 또한 개편한다.

② 학교는 최소전공학점, 복수 및 다전공, 연계전공 등 사회의 수요와 학생의 선택을 중시하는 교육과정을 도입·운영한다.

③ 교육과정은 전공(학과) 단위로, 교양 교육과정과 전공 교육과정으로 분류·편성한다.

④ 전공(학과)별 교육과정은 해당 분야를 전공한 교수에 의해 운영되며, 담당교수는 강의계획서에 따라 적절한 교재와 다양한 교육기법을 사용하여 창의적으로 강의한다.

⑤ 담당교수는 학생들의 학업성취 정도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한다.

⑥ 학교는 교내·외의 인적, 물적, 제도적 자원을 통합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제3장 교육여건

제5조(교원확보) ① 교육이념과 교육목표에 맞추어 대학의 본질적 기능이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우수한 연구업적과 교육자적 자질 및 인격을 고르게 갖춘 전임교수를 최대한 확보한다.

② 교원의 임용은 그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한다.

제6조(시설설비 확보) ① 학문연구와 교육활동을 위한 강의실, 실험실습실, 교수연구실, 체육장 등의 교육기본시설을 확보하고, 그 사용이 원활하도록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한다.

- ② 실험실습 기자재를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한다.
- ③ 정보화 사회를 지향하는 교육·연구지원 환경을 구축한다.
- ④ 모든 학생들이 평등한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구축한다.

제7조(기타시설 확보) ① 발전계획에 따라 교육지원시설, 연구지원시설, 후생복지시설, 특수시설 및 기타 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확보·개선한다.

- ② 도서관은 학문연구 및 교육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장서 확대와 정보 제공 경로의 다양화를 위해 체계화된 설비와 기능화된 공간을 구비한다.

제4장 학사관리

제8조(학생선발) ① 교육이념과 장기발전계획에서 설정한 학교 특성화의 방향을 반영한 학생선발기준에 의해 학생을 타당한 방법과 공정한 절차로 선발한다.

- ② 교육기회의 균등화와 평생교육을 실천하기 위하여 다양한 선발 기준과 전형 방법을 통하여 학생을 선발한다.

- ③ 다양하고 변별력 있는 학생선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하여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한다.

제9조(학생정원 관리) ① 학생정원은 사회의 인력 수급 전망, 교육기회의 균등화, 학교의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 ②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는 특수 환경 출신자에 대해서는 입학정원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 ③ 편입학, 전과, 재입학 등에 관하여는 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10조(학기제도) ① 학기는 연 2학기제로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계절수업을 개설한다.

- ② 학점은행제, 시간제등록제, 계절학기제 등의 운영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 교육체제의 구축과 교육의 다양화를 추구한다.

- ③ 사회와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학기제도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제11조(대학간 학술교류) 학교는 국내·외 대학과 학술발표회, 공동연구, 교수교류, 학점교류, 학생교류, 학술정보교류 등 각종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제5장 대학운영

제1절 인사관리

제12조(교직원의 채용기준) ① 교원은 해당분야의 전공자로 연구실적, 학술활동 및 교육경력, 연구 및 학생지도에 대한 능력을 갖춘 자를 임용한다.

- ② 국내외 석학과 산업체의 전문가 등을 석좌교수, 명예교수, 겸임교수, 객원교수 등 특별임용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③ 대학행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능력 있는 직원을 채용한다.

제13조(교직원의 채용절차) 교직원의 채용은 그 절차 및 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한다.

제14조(교직원 평가) ① 학문적 수월성과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하여 교수업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 ② 행정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원업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제15조(교직원의 능력향상) ① 학교는 교수의 학문발전과 교수방법개발 등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 ② 학교는 직원의 효율적인 행정집행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제2절 재 정

제16조(재정확보방안) 대학은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재정계획을 수립한다.

제17조(발전기금 모금) 대학의 장기발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대학재정의 건전화에 위하여 대학

발전기금을 확보한다.

제18조(예산편성 및 집행) ① 대학은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운영하며, 예산·회계제도와 절차상의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재정을 공개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제19조(재정공개) 학교는 재정공개원칙을 준수하며, 예·결산회계 결과를 공개한다.

제20조(수익사업의 시행) 학교는 학교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1조(법인의 수익용 재산 확보계획 및 관리) ① 법인은 대학의 발전과 건실하고 안정된 재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정기준 이상의 수익용 재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② 법인은 수익용 재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용·관리한다.

③ 법인은 수익용 재산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제6장 후생복지

제22조(학생장학금) ① 학교는 성적우수학생과 모범학생 등에게 적정수준의 학비를 감면하고 다양한 장학금을 지급한다.

② 학교는 정부기관, 기업, 동창회, 지역사회 등으로부터 각종 교외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3조(학생자치기구의 지원) 학교는 학생단체의 건전하고 다양한 자치활동을 위하여 교수·지도와 시설·설비확충 및 예산지원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학생기숙사) 학교는 학생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휴식하고 면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숙사 시설을 갖춘다.

제25조(교직원 복지) ① 학교는 교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지원한다.

② 학교는 교직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복리증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

제26조(학생진로 지도 및 취업대책) 학교는 학생들의 성숙한 인격형성과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위하여 면학과 진로 및 취업 등 학생생활의 전반을 상담·지도한다.

제7장 사회봉사 및 산·학·연 협동

제27조(사회봉사) ① 학교는 건학이념과 교육목적에 입각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사회봉사를 시행한다.

② 학교는 사회교육 등 사회봉사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개발·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28조(산·학·연 협동) 학교는 사회현장과 학교교육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동체제를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한다.

제8장 장·단기 발전계획

제29조(발전계획수립) 학교는 대학의 발전과 미래의 비전에 관한 장·단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학내외의 유동적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제9장 보 칙

제30조(대학헌장의 보완) 학교는 학교법인의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누가 기록하는 방법에 의하여 대학헌장을 보완할 수 있다.

부 칙(제정 2014. 9. 1)

1. (시행일) 이 헌장은 2014년 9월 1일 공포한다.